

환경분쟁 재정절차 배상액 현실화 방안*

-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

홍 준 형**

차 례

- I. 머리말
- II. 문제의 제기
- III. 소음·진동 관련 재정에서의 배상기준 개정시 고려요소
- IV. 소음·진동 관련 재정에서의 배상기준 개정방안
- V. 맺는말

[국문초록]

지난 20년간 괄목할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아직도 개선 또는 보완을 요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배상액 수준과 관련하여 환경분쟁 재정결과가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거주지 인근에서 많이 시행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정 신청이 늘고 있지만 배상기준이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어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환경분쟁 재정

* 이 글은 한국환경법학회(홍준형·강정혜·유진식 3인 공동연구),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구용역과제: 2010년 4월 21일~2010년 10월 20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강정혜·유진식 교수와 김민휴 보조연구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절차 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에 있어 현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배상액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배상 수준을 도출하고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범위는 첫째, 생활소음 중 공사장 소음·진동을 피해원인으로 하는 분쟁, 둘째, 소음·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으로 한정한다.

I. 머리말

196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등 환경선진국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발전하게 된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환경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재판제도가 한계를 노정하여 이를 대신할 보다 신속·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특히 1970년대 들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법원의 소송부담을 덜어 주는 등 재판제도의 과부하를 완화시킬 수 대안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각국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경분쟁에 관하여 재판외적 분쟁조정 제도를 제도화한 데에는 이와 같은 「구제에서 조정으로」라는 인식의 전환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정을 계기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1997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이름이 바뀌는 등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환경분쟁조정법」은 2002년 12월 점증하는 환경분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개정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환경피해 구제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환경피해 유형 즉,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등을 분쟁조정대상 범주에 추가하고 기존

1) 南博 方, JURIST, 二〇周年を迎えた公害調整委員會, 1992.9, 30面.

의 건강상·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여 한국 특유의 환경분쟁해결제도도 정착되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아직도 개선 또는 보완을 요하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²⁾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환경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특히 배상액 수준과 관련하여 환경분쟁 조정결과가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거주지 인근에서 많이 시행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³⁾ 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정 신청이 늘고 있지만 배상기준이 너무 낮고 비현실적이어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즉,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재정에 있어 배상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제공자인 가해자들에게 대해서도 분쟁의 원인이 된 환경피해를 회피하거나 방지하도록 하거나 그것을 위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단지 환경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통한 미봉책을 넘지 못해 오히려 일종의 면죄부 같은 기능을 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대량

2)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문헌으로는 예컨대, 강정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2008, 185-204면; 박태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2008, 161-183면; 이희정, 환경분쟁의 발생배경, 유형 그리고 대책-환경분쟁조정제도의 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2006, 3-44면; 조홍식,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경제학-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통권 제32호, 2006. 3; 최병록,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2007; 하혜영, 환경분쟁에서 조정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정성립 요인의 판별과 예측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4), 2009, 335-357;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2006., 356-382면; 홍준형 외(편),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 법문사, 2008 등을 참조.

3) 실제로 2008년 (주)월드리서치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아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의 환경피해 경험 중 건설 및 도로공사장 피해는 31.7%(’06년 19.8%)로 나타났다.

의 분쟁을 획일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개별적인 환경피해를 낱낱이 주장하여 충분히 구제받기 어렵고, 또 그만큼 배상액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환경분쟁 재정절차 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에 있어 현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배상액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배상 수준을 도출하고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범위는 첫째, 생활소음 중 공사장 소음·진동을 피해원인으로 하는 분쟁, 둘째, 소음·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으로 한정한다. 논의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한 것은 소음·진동 피해가 전체 처리 사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 내용별로 처리된 사건 중 정신적 피해가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그 뒤를 잇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II. 문제의 제기

1. 환경분쟁조정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총 2,86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여 2,416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340건이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111건이 처리 중이다. 분쟁처리 현황을 피해 원인 별로 보면, 처리된 2,416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2,070건(86%)이고, 대기오염 155건(6%), 수질오염 72건(3%), 해양오염 9건(0%), 기타 110건(5%)으로 나타났다.⁴⁾

이와 같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처리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소음·진동 분야 분쟁의 대부분은 도심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0년 12월말 현재 환경분쟁처리 통계현황(<http://edc.me.go.kr/jsp/information/statis.jsp>) 참조.

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나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피해호소들이다. 소음·진동사건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도심지의 경우,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및 아파트 건설 공사 등 규모가 다양화되고, 공사장 인근의 건축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피해 내용별로 보면, 처리된 2,242건 중 정신적 피해가 888건(40%)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526건(23%), 축산물 피해 286건(13%), 농산물 피해 138건(6%), 건축물 피해 72건(3%), 수산물 피해 58건(3%), 기타 274건(12%)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분쟁조정절차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이 늘어난 것도 바로 그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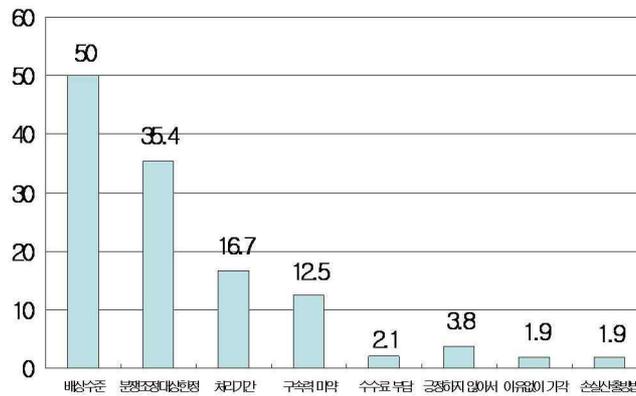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재정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근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이다. 배상액 산정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 기준표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위 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오염도별, 피해 대상별 평가방법과 그 적용, 그리고 수인한도의 적절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물리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은 물리적 지표를 근거로 하여 적절한 수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피해주민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불만족도가 사실상 높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신청금액을 높게 제출하면 배상결정액이 많아 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2009년도 배상 결정된 169건의 신청 금액은 총 61,711백만원이었고 배상결정액은 3,846백만원으로 배상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인용된 배상결정액이 신청액의 평균 6.2%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환경피해평가방법은 개별적인 오염매체에 대해 연차 별로 수행

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피해주민에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2008년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도 민원인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만족도가 51.5%(06년 49.0%)로 나타났고, 불만족 사유 중 배상금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50%에 이르고 있다.⁵⁾

<그림 1> 분쟁 조정 결과 불만 사유



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월드리서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2008)

한편, “2009년도 환경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상수준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중 신청인(48명) 중 54.2%(26명)가, 피신청인(47명) 중 74.5%(35명)가 각각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만족도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환경피해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승

5) 이 조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2008.8.26~9.4에 걸쳐 만19세 이상 성인남녀(523명), 분쟁조정제도 이용 민원인(101명: 신청인 50명, 피신청인 51명), 분쟁조정 전문가(54명)를 대상으로 전화, fax, e-mail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27.9%, 민원인 만족도 51.5%로 나타났다.

복한다기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선호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분쟁조정 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배상액 산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 평가방법과 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III. 소음·진동관련 재정에서의 배상기준 개정시 고려요소

1. 개설

1990년대 이후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던 환경소음·진동 문제가 새로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연도별 환경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간 신청 건수가 56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연평균 400~500건으로 급증하였다. 피해 평가를 위한 수인한도가 환경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⁶⁾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소음 수인한도가 70dB에서 65dB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소음 수인한도 강화(5dB)에 따라 단위당 배상액은 강화된 소음 수인한도의 적용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추후 재조정하기로 유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 인한 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먼저, 소음·진동 관련 재정에서의 배상기준 개정시 고려요소로서 2009년도 수인한도 강화효과를 분석하고, 배상액 수준을 재정 불복 사건에 있어 법원 판례상 배상기준과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배상액 산정 기준을 현 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 수준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6)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 10.

2. 2009년도 수인한도 강화 효과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대화 방해,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치인 규제기준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설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근본적으로 주·야간에 느끼는 감각적 차이를 인정하여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등 규제 방법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제기준을 정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3년 11월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 아파트 소음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를 최초로 인정한 이후 명확한 기준 없이 사회 통념과 사건을 담당한 심사관, 위원의 양식에 의존하여 결정해 왔으나, 1999년 12월 심사관의 주관성과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재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지침”을 최초로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배상여부 및 배상기준을 산정하는 근거로 사용해 온 소음·진동에 대한 수인한도가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정한 규제치에 비하여 대체로 높게 설정되어 지난 2009년 1월 소음 수인한도를 70dB에서 65dB로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존 배상액 산정 기준은 최초 제정시부터 2차 인상(2006년 1월)까지 연평균 11.6%(총 70%)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소음 수인한도 강화(5dB)에 따라 단위당 배상액은 강화된 소음 수인한도의 적용효과를 비교·분석한 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2009년도 수인한도 강화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10년도 재정 결정 사건 중 공사기간이 2009년도인 사건을 대상으로 수인한도가 70dB인 경우와 65dB인 경우를 각각 산출하여 재정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제한적이나마 그 효과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 <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배상액 산정기준을 조정함에 있어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

< 표 1 > 배상액 인상 경과

(소음도 70~74dB, 피해기간 1년 기준)

구 분	최 초	1차 인상	2차 인상	3차 인상
일 시	'99.12월	'02.6월	'06.1월	'09.1월
금액(천원)	200	230	340	340*
인상율(%)	-	15	47.8	-
인상근거		- 물가상승률 반영	- 물가상승률 및 소득 증가율 반영	

* 소음 수인한도 강화(5dB)에 따라 배상액이 2~3배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위 금액을 인상하지 아니함.

< 표 2 > 수인한도 강화효과 분석

사건번호	재정결정일	70dB 적용시(기준강화 전)			65dB 적용시(기준강화 후)		
		피해기간(일)	대상인원(명)	총배상액	피해기간(일)	대상인원(명)	총배상액
09-3-227	2010.7.15	31	171	13,801,280	117	389	29,197,970
09-3-109	2010.1.21	85	4	1,600,000	180	4	9,600,000
09-3-174	2010.2.18	75	2	775,000	165	2	1,075,000
합 계		261	177	16,176,280	527	395	39,872,970
기준강화 전후 비교				100			246.5
1인당 평균배상액				91,391			100,944

영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2002~2004년 배상액 인상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모두 반영한 바 있다. 참고로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음 < 표 3 > 과 < 표 4 >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준강화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강화된 수인한도를 적용해 보면 피해기간, 배상대상인원 그리고 총배상액이 기준강화 이전에 비하여 약 2.5 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물론 강화된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아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수인한도 강화에 따른 배상액 인상효과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현행 배상액 산정 기준표가 물가상승률 및 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2006년에 만들어

< 표 3 > GDP 성장률

계정항목별	1999	2000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	2011 (추정)	2012 (추정)	평균
국내총생산 (단위: 10억원)	549,005	603,236	651,415	865,241	908,744	975,013	1,026,452	1,063,059	1,135,913	1,213,761	1,296,943	
성장률(%)	0	9.9	8.0	4.6	5.0	7.3	5.3	3.6	6.9	6.9	6.9	6.9
누적증가 율(%)	100	109.9	118.7	118.7	124.6	133.7	140.8	145.8	155.8	166.4	177.9	

* 2002~2004년까지는 배상액 인상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모두 적용하였으므로 생략

< 표 4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수종류	1999	2000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	2011 (추정)	2012 (추정)	평균
총지수	0	2.3	4.1	2.8	2.2	2.5	4.7	2.8	3.1	3.1	3.1	3.1
누적증가 율(%)	기반영			100	102.2	104.8	109.7	112.7	116.3	119.9	123.7	

* 2002~2004년까지는 배상액 인상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모두 적용하였으므로 생략

졌으므로 2000~2001년에 누락된 경제성장률 18.7%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연평균 6.9%)과 GDP 성장률(연평균 3.1%)이 유지 된다고 가정한다면, 총 2.0배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수인한도 강화 효과인 약 2.5배 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이는 수인한도 강화효과가 현행보다 약 2.5배 증가되어 물가상 승률 및 경제성장률 인상효과를 흡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 적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배상결정액 분석

가. 배상액 결정방법

생활소음 및 진동피해와 관련하여 가장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공사장

소음 및 진동 관련 분쟁이다. 특히 점점 조밀하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주거지역 내에서 일부 지역을 개발·재개발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 구역과 접하고 있는 기존 거주자들의 공사장 소음 및 진동 피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후화된 기존 주거지역의 개발 사업 내지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예측되므로 공사장 소음 및 진동 관련 분쟁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소음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생활소음, 교통소음, 층간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사장 소음은 생활소음에 해당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생활소음에 해당하는 소음은 공사장(건설기계, 발파), 공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나뉘며 각각 수인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공사장 소음과 교통소음은 생활의 정온성과 평온함을 해하고 사람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이나, 교통소음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내지 사회공익적인 시설로부터 소음이 유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로, 철도 등의 공공적,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교통소음의 경우에는 통상의 소음피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며, 실제 우리 판례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반영되고 있다.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공사장 소음을 포함한 소음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의 정도’와 ‘그 소음의 발생 기간’을 배상액 산정요소로 삼아 구간별로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소음분쟁 사건 해결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해자의 소음 방지 조치 및 피해 경감 노력, 주거지역의 특성, 소음피해의 입증방법(실측치인지 추정치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은 두 가지 요소, 즉 소음의 정도와 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적 피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행정처분, 조석시간대 공사, 후주자 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7) 0이상~5미만, 5~10, 10~15, 15~20, 20~25, 25 이상으로 초과소음도 단위[dB(A)]를 구분한다.

< 표 5 > 피해원인 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

유형		개요
소음피해	생활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소음도 5db 단위로 피해기간은 7일, 15일, 1월부터 6월, 9월, 1년, 1년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이내로 구분 ○ 최저 50,000원, 최대 1,340,000원
	교통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소음도 5db 단위로 피해기간은 1월부터 6월, 9월, 1년, 1년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이내로 구분 ○ 최저 80,000원, 최대 1,180,000원
	충간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음보수비 및 정신적피해 인정 ○ 정신적 피해는 초과소음도 5db 단위로 피해기간은 1월부터 6월, 9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이내로 구분하여 최저 80,000원, 최대 1,010,000원
진동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진동도 5db(V) 단위로 피해기간은 7일, 15일, 1월부터 6월, 9월, 1년, 1년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이내로 구분 ○ 최저 25,000원, 최대 670,000원
먼지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150μg/m³초과의 경우를 30μg/m³단위로 1월부터 6월, 9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6개월, 3년 이내로 구분 ○ 최저 70,000원, 최대 1,290,000원
악취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세기 2.5도 이상을 구간별로 나누고 2주, 1,3,6,9월, 1년, 1년6개월, 2년, 2년6개월, 3년 이내로 구분 ○ 최저 160,000원, 최대 1,610,000원
가축피해		소음, 진동에 의한 축종별 피해발생예측률 및 사육여건에 따른 피해를 보장범위에 따라 축종별 피해액 산정
육상양식어류피해		수중소음에 의한 어종별피해 발생 예측률, 양식환경 및 양식기술평가 항목별 조정계수 산출표에 따라 양식어종별 피해액 산정
건축물피해		보수, 보강공사비·감정가·건축가 등을 기준으로 진동기여도 등을 대입하여 산정
농작물피해	일조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에 따른 수확량감소율·하품율·비상품율 등을 대입하여 산정
	기타 원인	표준소득금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액에 농장주의 과실을 상계하여 산정
수산물피해		정상출하량에 기한 판매금액에 미지출 제반경비를 공제한 다음 양식주의 과실을 상계하여 산정
새집증후군피해		치료비, 개선비용, 정신적 피해액에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산정
일조피해		일조침해량(4시간-실 일조시간)에 해당하는 난방비 및 조명비, 재산가치하락비 등

나. 배상액 인정 범위

소음 피해와 같은 환경피해의 배상액 산출에서 인정되는 피해배상의 종류는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위자료)로 나뉜다. 재산적 피해는 소음으로 인한 재산상 가치의 감소피해, 영업감소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감소피해, 소음으로 인해 유발된 치료비용, 소음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 거주지를 구한 경우 그 대체 거주비용 등을 포함한다.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생활소음 피해배상액 기준표는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생활소음 피해배상액 기준표는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국한되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생활소음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경우, 생활소음 피해가 통상 일시적·일과적 특성을 띠기 때문에 증거수집이나 인과관계 측면에서 손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치료비나 방어시설 설치 비용 등과 같은 간접증거에 의한 피해 인정도 종종 곤란하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을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국한하여 인정해 왔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배상액 산정기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산정기준⁸⁾은 < 표 5 >에서 보듯이 피해 원인 유형별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배상액 산정기준표에서 인정되는 피해배상의 종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 표 6 >에서 보듯이 공사장 소음과 같은 생활소음의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만 나타나 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산정기준이 없다. 물론 산정기준표가 없다 하여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향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산정기준표에 이와 관련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업무참고용), 2010. 1.

< 표 6 > 피해원인 유형별 배상 범위

유형		위자료(정신적 피해) 배상	실손해(재산상 피해 등) 배상
소음피해	생활소음	위자료	-
	교통소음	위자료	-
	층간소음	위자료	차음보수비 배상
진동피해		위자료	-
먼지피해		위자료	-
악취피해		위자료	-
가축피해		-	재산상 피해 배상
육상양식어류피해		-	재산상 피해 배상
건축물피해		-	재산상 피해 배상
농작물피해	일조	-	재산상 피해 배상
	그밖의 원인	-	재산상 피해 배상
수산물피해		-	재산상 피해 배상
새집증후군피해		위자료	재산상 피해 배상
일조피해		※배상액산정기준에 위자료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됨	재산상 피해 배상

라. 재정사건 배상신청액과 배상결정액 수준의 비교

재정의 경우, 사건별로 환경침해의 정도, 환경침해의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배상액을 분쟁 건수나 1인 당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음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첫째, < 표 7 >에서 보듯이 재정사건의 1인당 평균적인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도의 221,407원에서 163,934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재정 결정된 사건 수가 2008년도 40건에서 2009년도 42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1인당 평균 배상액은 전년도의 74%(163,934/221,407)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 표 8 >에서 보듯이 2009년도의 경우 재정사건에서의 배상결정액은 당사자들이 신청한 금액의 6.2%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도 배상율(12.5%) 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순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표에 이루어지는 재정금액이 신청인들의 배상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배상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에 시행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인들 중 50.0%(24명)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배상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고(앞의 < 그림 1 > 참조), “2009년도 환경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상수준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중 신청인(48명)은 54.2%(26명), 피신청인(47명)은 74.5%(35명)이 각각 만족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7 > 2008~2009 재정사건 정신적 피해배상액 현황

접수년도	건수	1인당 배상액	배상인원	배상액(단위: 원)
08년계	40	221,407	5,027	1,113,012,274
09년계	42	163,934	5,003	820,163,505
합 계	82	192,739	10,030	1,933,175,779

< 표 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배상율

(금액단위: 천원)

구 분(년도)	배상결정건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상율%(B/A)
'08	127	41,360,289	5,180,930	12.5
'09	169	61,711,877	3,846,699	6.2

4. 판례상 배상수준과의 비교

가. 판례상 배상수준 및 배상액 결정요소

판례에 나타난 공사장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한 배상액 판단 기준을 포괄적·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⁹⁾ 다만 실무상 판례가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9)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각의 사안 마다 침해원인과 정황, 배상액 인정여부나 기준,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0.2.5. 선고 2008가합23977(확정)과 서울중앙지법 2009.8.26. 선고 2008가합72566호(항소심 조정 성립) 등 중앙지방법원 환경 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나온 최근 판결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들 판례는 해당 사건의 특수성(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과정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건이 법원의 일반적 기준에 해당하는 배상액 수준을 보여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시장 소음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요소” 즉 ‘청구의 근거·침해의 정도와 위법성·소음과 다른 유형의 침해와의 차이·수인한도·공법적 규제와 수인한도·생활이익의 내용에 따른 수인한도의 수정가능성·거주요건과 소음피해 인정’을 자세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⁰⁾ 아울러 이들 판례는 사후의 추정적 방식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음피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소음피해의 입증 방식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를 두는 것도 합리적인 배상액 산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후에 관련 자료를 통한 추정 소음치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실측 소음치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추정 소음치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측 소음치의 경우보다는 배상액을 다소 가감하여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사항 등 사정이 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또 평균 개념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점,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여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을 참조) 실제로 각급 법원이 어떤 기준 또는 고려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는지를 파악하기도 매우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10) 수인한도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도 그런 맥락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공2011상,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생활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표상의 소음도는 실제 측정 또는 평가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한다.¹¹⁾ 그러나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소음 평가치의 경우 평가 소음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현장측정, 신청인의 측정자료, 및 소음 유발자 측(시공회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사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생활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표상의 소음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제 측정치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치를 우선 적용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 총액 산정시 평가치의 경우 현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일부 가감하여 적용하고 있다.

(1) 서울중앙지법 2010.2.5. 선고 2008가합23977(확정)

이것은 길음 제8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인근의 아파트 거주민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함), 그리고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23977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의 근거

위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의 근거를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손해배상청구의 형식으로 묻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음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는 그 자체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법성 대상으로서의 평가가능성과 수인한도 등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환경 관련 법규 등에 의한 특별한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침해의 정도와 위법성

법원은 “어떤 생활이익 침해행위 또는 그 결과가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생활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표(주 1) 참조.

성 판단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정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건축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원고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은 명백하고 피고의 건축행위가 공공성을 지니거나 여타의 이유로 인하여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정도의 면에서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만 국한하여 판단하였다.

(다) 소음과 다른 유형의 침해

건설공사에 따른 생활이익의 침해요인으로 소음 이외에도 진동·분진 등이 있으나 소음은 다른 유형의 침해와는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특이하다. 즉 소음은 피해자에게 노출되는 즉시 인식할 수 있고 매우 민감한 반응을 초래하며, 소음원에 대한 파악과 인과관계가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특성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와 같은 이유로 소음과 관련된 쟁송에서는 주로 수인한도만이 문제되며,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소음과 달리 진동이나 분진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려면 소음의 경우보다 좀 더 명백한 주장·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수인한도

수인한도의 판단은 양적인 요소, 질적인 요소, 공익성 요소 등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양적인 면에서 수인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질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또는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소음에 관해서도, 그 소음의 크기가 문제될 수 있는가 하면, 소음의 형태,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도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데시벨(dB)로 표시되는 그 크기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정도를 넘지 않는다 하여 무조건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음의 형태를 띠거나, 강도나 형태의 면만을 분리하여 본다면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발생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적법행위로서 그 결과가 수인되어야 할 고도의 공공성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보통의 경우 이를 들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제에 있어서도 일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산정 기준표에 따라 배상을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비록 기준치 내의 소음이라도 발생기간의 장기간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경우 배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공법적 규제와 수인한도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위 법규에 적합한 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은 해당 보호법의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¹²⁾ 즉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제치를 넘는 소음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 규제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일응 배상액 산정 기준표상의 소음기준치 이내의 기준치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상액 산정 기준표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2) 대법원 2000.5.16. 선고 98다56997 판결 참조.

(바) 생활이익의 내용에 따른 수인한도의 수정가능성

생활이익의 내용에 따라 수인한도의 수정가능성이 수정될 여지도 있는데, 즉 피해 지측의 생활이익이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발생하기 시작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와 그러한 형성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그 형성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도의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가 반드시 같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인한도의 수정을 손해배상의 감액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 거주요건과 소음피해인정

위 판례는 모든 피해자가 소음이 발생하는 기간 내내 소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주지 내에서 항상 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즉 소음피해는 생활이익 침해의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는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의 일정부분을 “추상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 판례는 각 피해자들이 그대로 그 소음에 노출된 채로 생활하였는지 실제로는 그때 그때 집을 떠나 있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노출을 피했는지 여부 등은 고려할 요소가 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해당 거주지를 완전히 떠난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 위자료 손해액의 범위

위 판결은 원고 1인당 월 4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았다. 위 판결은 위 금액 산정의 근거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특기할 점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과정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소음피해를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인데 이 사건에서 소음도는 “소음원에서의 소음 크기와 소음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수음점에서의 소음을 예측하여 도출¹³⁾”한 점이 특징이다. 위 판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음도를 예측한 다음, 피고 측이 그 위법성을 제거하려면 당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상당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예를 들면 사용된

13) 적용된 예측 소음도 측정식을 대입하면, 소음원으로부터 거리가 기준거리의 두 배인 지점에서의 예측 소음도는 기준 소음도에 비하여 약 6dB이 감소하게 된다.

장비가 그와 같은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임을 입증하거나 거리 감쇠 이외에도 소음 저감 장치를 사용하여 수음자의 위치에서의 소음이 상당한 크기 이내가 되었다는 점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위 예측(추정)을 저지할 만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판례는 실측된 소음도에 기초하여 공사장 소음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서울중앙지법 2009.8.26. 선고 2008가합72566호(항소심 조정 성립)

이것은 행당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사건 판결로서, 앞서 본 서울중앙지법 2010.2.5. 선고 2008가합23977 판결과 유사한 판례이다. 원고 1인당 월 4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았고,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여 소음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산지방법원 2004.11.18. 선고 2003가합649 판결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관련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관할구청은 아파트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2001. 11. 22. 소음을 측정한 결과 76.1dB로서 소음진동규제법 및 그 시행규칙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5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에게 방음시설 설치 및 저소음·진동장비를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고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의뢰하여 측정된 소음치는 2002.5.22. 78.24dB로 측정되었으며, 같은달 23에는 75.93dB이 측정되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75dB를 초과하였다. 이와 별도로 위 판례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발생가능성에 대한 측정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소음 피해 상황 및 구청으로부터 방음시설 설치 및 저소음·진동장비를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 1인당 50만원을 인정하였다. 한편 나머지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심야의 경우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55dB

로 낮아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손해액을 인정하였다.

(4) 서울동부지법 2004.7.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0.4.경 원고 주택과 블록담장을 경계로 약 1m 떨어져 있는 준공업지역내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소음, 악취등을 발생시켜 왔는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 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 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소음 위반의 정도를 보면, 원고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야간소음을 측정된 결과 2000.10.5. 56dB, 2000.11.10. 52dB, 2001.1.6. 49dB, 2001.4.19. 48dB, 2001.5.29. 57dB, 2001.9.28. 53dB로 측정되었는데, 이 중 2000.10.10.과 2001.5.29.의 위 측정결과는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의 야간 공장소음 허용기준인 55dB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 각 야간소음배출기준을 초과한 데 대해 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2001.5.경 원고 주택과 인접한 블록담장의 벽을 보강하여 높이는 방법으로 방음시설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가 공장의 방음시설을 설치한 이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피고 공장의 소음 등의 측정결과가 모두 공법상 규제기준 이내였으므로 원고의 금지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공법적 규제는 통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기준한도를 설정하여 놓은 것뿐이므로 가사 피고 주장처럼 소음이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고 공장 소음 등의 피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이상 피고의 침해행위는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장래의 침해 금지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0.4.경부터 2001.12.9. 야간작업가처분결정의 집행시까지의 소음·악취에 대하여 원고 주택 및 피고 공장의 현황, 발생한 소음, 악취의 정도, 피해의 회피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3,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악취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액 1,450,000원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5) 그 밖의 판결

그 밖에 아파트 신축공사로 소음규제기준인 70dB를 넘는 75dB의 소음이 측정된 사안에서 인근 거주자들에게 50만원씩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00.5.26. 선고 99나9295 판결), 기존 건물의 화약식 폭발방법에 의한 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가 3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음규제기준인 70dB를 넘는 875dB의 소음이 측정된 사안에서 인근거주자들에게 주거상황에 따라 100만원, 75만원,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¹⁴⁾

한편, 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소음규제기준인 70dB를 넘는 소음이 약 5개월 동안 76~86dB의 소음이 측정된 사안에서 인근거주자들에게 120만원 씩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¹⁵⁾

나. 재정 결정과 법원 판례간 배상 수준의 비교

소음 분쟁과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하여 법원으로 불복절차가 이행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과 법원 판결의 배상이 있게 되며, 그 경우 양자의 비교를 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수준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장 소음(생활소음)과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한 제소사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사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유에서 재정과 법원 판결간 배상액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14) 대구고등법원 2000.9.1. 선고 99나1988 판결.

15) 서울고등법원 2002.2.14. 선고 2000나60335 판결.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 판례와의 비교

아래 < 표 9 >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 판례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이 중 철도공사장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의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 결정 사이의 정신적 피해배상액의 인정 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 표 9 > 중 나머지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 결정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을 유지하는 수준의 판결이거나 아니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어 배상액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시 배상기준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어 비교분석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하여 법원으로 불복절차가 이행되는 경우 소음 피해자가 재정 액수(주로 재산상 피해액과 관련된 재정 액수)에 불만이어서 제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피신청인 즉 소음 유발자가 결정된 피해배상액의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형태로 제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신청인이 법원에 제소할 경우 소음 피해자들이 대체적으로 소액의 배상청구권자로서 굳이 비용을 들여 재판에 응소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 및 응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전문적 법률전문가를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려 하지는 않는 경향을 이용하여 소송 절차나 소송 기법을 이용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정과 법원 판결간의 배상액 수준이나 판결 결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소송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계 하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정사건과 법원 판례와의 배상액 금액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2) 재정사건번호 08-3-○○과 대전지법천안지원 2009.9.11.선고 2008가합3896

장항선 전철복선화를 위한 온양온천고가 시공공사로 인한 소음 등 피해 분쟁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손해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갑 제5,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표 9 > 재정사건과 법원 판례 비교

사건번호	사건명	피신청인	재정 결정내용	법원 판결·결정내용
05-3-00	아파트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주)○○	○ 91,924,950원 배상	○ 화해권고금액 66,250,000원 지급
06-3-00	아파트 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물산	○ 축대철거에 따른 지반 변위 및 지하수 유출은 위원회 검토대상이 아님	○ 피고(시공사)는 한○○등 3인에게 건물보수비로 25,970천원을 지급
06-3-00	건물공사장 정신적 피해	○○○○	○ 41,985,580원 배상	○ 30,690,000원 배상
08-3-00	철도공사장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중공업	○ 건물피해 12,841,770원, 정신적 피해 1,709,280원 (이○○ 581,800원) 등 14,594,400원 배상	○ 이○○의 정신적 피해 1,500,000원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9.11. 선고 2008가합3896

* 사건번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생활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 액수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와 기간, 분진과 소음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취한 조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이○○에 대하여 1,500,000원으로 정한다.”¹⁶⁾

한편 위 사건이 판결로 이행되기 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주)○○중공업에게 신청인인 이○○에 대하여 581,800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었다.¹⁷⁾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자료 손해액을 비교해 보면 법원 판결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보다 약 3배 더 많은 배상액(1,500,000원)을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16) 2009.9.11. 선고 2008가합3896 판결.

17)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은 이○○의 정신적 피해 노출 정도에 대하여 소음도 수준 80~84dB(A), 피해기간 4월이내, 소음·진동 동시 초과로 판단하였다.

IV. 소음·진동 관련 재정에서의 배상기준 개선방안

1. 배상액 수준의 적정성 검토

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과 판례의 배상액 수준 비교 및 현실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하여 법원으로 제소된 경우, 공사장 소음(생활소음)과 관련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는 충분치 않고, 그런 사례의 경우에도 재정과 법원판결간의 배상액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9.11. 선고 2008가합3896판결에서 보듯이, 동일한 사안이 소송으로 이행된 결과 법원 판결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배상액보다 약 3배 더 많은 배상액을 인정했다는 점은 음미해 볼만 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과 판례의 배상액 수준과 비교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배상액 수준을 현실화할 경우 소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굳이 재정 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나. 생활소음과 교통소음의 배상액 구별

판례는 일반적으로 생활소음(공사소음) 피해배상의 경우 교통소음 피해배상보다 높은 배상액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사소음과 달리 도로나 철도의 교통소음은 도로나 철도가 공익 내지 공공시설로서 사회 일반인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수인한도를 달리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해 배상액 산정에 있어 생활소음의 경우 피해배상액을 다소 증액하는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배상액 산정의 임의적 보정 요소 도입

현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도 생활소음 피해 배상액 기준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개의 임의적 보정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 가)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피해 원인에 의한 배상액에 각각 원인별로 10~3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 (1)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소음)이 수인한도 -3dB 이내인 경우
 - (2) 먼지 또는 악취로 인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 나) 조석 시간대(아침 05:00~08:00, 저녁 18:00~22:00) 공사 등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의 최대 30%까지 가산할 수 있음
- 다) 기타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 중, 보정 요소 다)에 기타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분쟁해결의 구체적 타당성과 피해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 구체적인 보정 요소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 < 표 10 >과 같다.

< 표 10 > 배상액 산정기준표 보정 요소안

배상액 산정 요소(가감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위법성 여부(시정명령 등 행정적 제재 포함) ■ 특히 정온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주지역인지 여부(예; 산악지역, 전원주택 등) ■ 공사의 공익성 여부(피해자도 공사 후 이익을 누리는지 여부) ■ 분쟁 전후의 피신청인의 자세(배상경감 노력, 분쟁해결 노력 등) ■ 피해자의 연령 ■ 공사기간, 공사시간(조·석) ■ 후주자 ■ 종합적인 사정(판결의 변론의 전취지에 해당)

한편 소음 피해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음 피해의 경우 경우에 따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위자료 배상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주자의 경우(이미 소음이 발생하거나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소음발생원 인근에 거주하기 시작한 경우) 감액요소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¹⁸⁾

그리고 이러한 보정 요소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보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즉 임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2007년에 수행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에서는 1일 소음 발생량과 소음 발생 시간을 고려, 아래와 같은 가정을 통하여 소음 피해액을 산정한 바 있다.

소음 피해액은 피해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소음 피해액 산정은 과거 소음 피해배상의 연장선 상에서 고려한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상액 산정기준이 설정되었으며,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상액 산정 기준은 기준 소음도(수인한도)를 65dB로 하여 구해진 결과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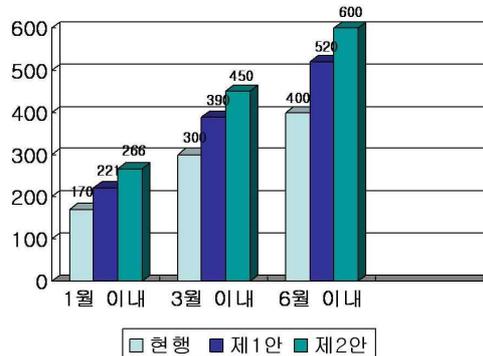
< 그림 2 >는 현행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주요 경제 지표(2009.12)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물

1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지만, ‘소음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아울러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을 참조.

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업무참고용), 2010. 1.

가 상승률은 약 3.1%/년, GDP 성장률은 6.9%/년 정도였다. 1999년부터 2006년 1월 까지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 산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약 3%)이 잘 반영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 그림 2 > 소음도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 인상에 따른 배상기준 강화효과가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배상액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배상액 수준이 이미 수인한도 인상에 따른 배상기준 강화효과에 넘지 못하므로, 추가 인상의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분쟁조정제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약 64.5%에 불과하다는 점과 명목 GDP 상승률이 연간 7% 정도인 점,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환경 소음에 대한 인식, 민감성 등이 변화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배상액 산정 기준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배상기준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배상액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을 바로 잡았다거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의 현실화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와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쾌적한 환경에의 욕구 증대, 환경 소음에 대한 인식 및 민감성 변화, 배상수준의 신뢰도 향상 등에 의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제1안 : 기존의 배상기준에 30% 인상
- 2) 제2안 : 기존의 배상기준에 50% 인상

< 표 11 >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제1안)

피해기간	초과소음도					
	0~5	5~10	10~15	15~20	20~25	25이상
7일 이내	65	104	169	260	390	520
15일 이내	91	169	286	429	585	741
1월 이내	104	221	390	559	754	936
2월 이내	156	325	520	728	936	1,131
3월 이내	202	390	598	819	1,014	1,248
4월 이내	247	442	663	871	1,092	1,313
5월 이내	280	488	702	923	1,131	1,352
6월 이내	312	520	741	962	1,170	1,391
9월 이내	390	598	819	1,040	1,248	1,469
1년 이내	442	663	884	1,092	1,313	1,534
1년6월 이내	520	741	962	1,170	1,391	1,612
2년 이내	592	793	1,014	1,235	1,443	1,664
2년6월 이내	624	845	1,053	1,274	1,495	1,703
3년 이내	663	884	1,092	1,313	1,534	1,742

*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물론 이와 같은 인상비율을 제안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 산정시 어떤 절대적 기준은 없고, 다만, 정신적 피해의 정도나 관계제이익의 형량 결과, 가해자의 손해방지 노력과 피해자측의 사정 등 정신적 피해에 기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수준을 개괄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상 수준을 도출하거나 가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고려, 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 회피 또는 방지에 대한

< 표 12 >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제2안)

(단위 : 천원/인)

피해기간 \ 초과소음도	0~5	5~10	10~15	15~20	20~25	25이상
7일 이내	75	120	195	300	450	600
15일 이내	105	195	330	495	675	855
1월 이내	120	255	450	645	870	1,080
2월 이내	180	375	600	840	1,080	1,305
3월 이내	233	450	690	945	1,170	1,440
4월 이내	285	510	765	1,005	1,260	1,515
5월 이내	323	563	810	1,065	1,305	1,560
6월 이내	360	600	855	1,110	1,350	1,605
9월 이내	450	690	945	1,200	1,440	1,695
1년 이내	510	765	1,020	1,260	1,515	1,770
1년6월 이내	600	855	1,110	1,350	1,605	1,860
2년 이내	683	915	1,170	1,425	1,665	1,920
2년6월 이내	720	975	1,215	1,470	1,725	1,965
3년 이내	765	1,020	1,260	1,515	1,770	2,010

※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심리강제를 가능케 할 수준의 배상기준을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인상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비율로 인상결과를 파악해 봄으로써 현실적으로 배상액 수준 인상의 효과를 가늠해 보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액 인상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실행가능한 수준에서 합당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공사장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의 경우 생활소음규제 기준법인과 달리 조석의 구분은 하지 않았다. 조석 시간대는 절기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과 일치하므로 수면이나 휴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조석 시간대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 입증되어 피해인정 기준을 넘을 경우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석 시간대의 구분은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진동원에 따라 주관적 반응의 정도는 매우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진동에 의한 불쾌감은 소음의 그것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진동 수준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보다 낮게 책정하여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도 소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제1안 : 기존의 배상기준에 30% 인상

2) 제2안 : 기존의 배상기준에 50% 인상

< 표 13 >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제1안)

(단위 : 천원/인)

피해기간 \ 초과소음도	0~5	5~10	10~15	15~20	20~25	25이상
7일 이내	49	78	127	195	293	390
15일 이내	69	127	215	322	439	556
1월 이내	78	166	293	332	566	702
2월 이내	117	244	390	546	702	849
3월 이내	151	293	449	615	761	936
4월 이내	186	332	498	654	819	985
5월 이내	209	365	527	693	849	1,014
6월 이내	234	390	556	722	878	1,044
9월 이내	293	449	615	780	936	1,102
1년 이내	332	498	663	819	985	1,151
1년6월 이내	390	556	722	878	1,044	1,209
2년 이내	439	595	761	927	1,083	1,248
2년6월 이내	468	634	790	956	1,122	1,278
3년 이내	498	663	819	985	1,151	1,307

※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 표 14 >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안)(제2안)

(단위 : 천원/인)

피해기간 \ 초과소음도	0~5	5~10	10~15	15~20	20~25	25이상
7일 이내	57	90	147	225	338	450
15일 이내	80	147	248	372	507	642
1월 이내	90	192	338	383	653	810
2월 이내	135	282	450	630	810	980
3월 이내	174	338	518	710	878	1,080
4월 이내	215	383	575	755	945	1,137
5월 이내	242	422	608	800	980	1,170
6월 이내	270	450	642	833	1,013	1,205
9월 이내	338	518	710	900	1,080	1,272
1년 이내	383	575	765	945	1,137	1,328
1년6월 이내	450	642	833	1,013	1,205	1,395
2년 이내	507	687	878	1,070	1,250	1,440
2년6월 이내	540	732	912	1,103	1,295	1,475
3년 이내	575	765	945	1,137	1,328	1,508

※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소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동의 경우에도 조석 시간대에 공사가 진행된 것이 입증되어 피해인정 기준을 넘을 경우,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aulsen et al.(1995)의 실험으로부터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Annoyance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음·진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소음도 또는 진동도 중 하나만 수인한도 이상의 수준이 나타날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을 기준으로 10~50% 정도의 배상액을 가산하고, 소음도와 진동도가 동시에 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각 상황 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고 진동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혹은 진동도가 수인한도를 넘고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 현행 유지
- 2) 소음도, 진동도 모두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 배상액이 많은 피해액의 30~50%
- 3) 소음도, 진동도 모두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수인한도로부터 -5dB(A), -5dB(V) 이내인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배상 판정 가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문제에 있어서 아파트의 경우 높이에 따라 소음·진동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차폐물 등으로 인하여 일부가 기준치에 미달되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민들의 불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 기준이 넘는 위치의 평균 소음·진동도와 넘지 않는 위치의 소음·진동도를 실측 혹은 예측을 통하여 구한 뒤,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할 때 사용했던 소음 피해량은 에너지의 로그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배상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ext{기준치 이상인 세대의 1인당 배상액}) \times \frac{\text{기준치미만인지점의소음진동도}}{\text{기준치이상인지점의평균소음진동도}}$$

단, 피해인정 기준으로부터 -3dB(A)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됨

V. 맺는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수행된 오염 매체별 환경피해 평가 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 중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매우 오래 된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현 시점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9년도 설문조사 결과 현행 배상기준에 대한 불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염원에 따른 피해 대상별 평가 방법과 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이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제안하여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평가 방법 및 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고, 특히, 결정된 배상액이 조정 서비스의 불만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행 배상액 산정 기준의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국가 경제 성장률, 환경 소음·진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 등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조속히 환경분쟁조정 정책과 실무에 반영되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한국 특유의 환경분쟁해결제도로 더욱 실효성 있게 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논문발표일 : 2010. 11. 24. 심사일 : 2011. 4. 15. 게재확정일 : 2011. 4. 22.

참고문헌

- 강정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 박태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 10.
- 이희정, 환경분쟁의 발생배경, 유형 그리고 대책-환경분쟁조정제도의 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 조홍식,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경제학-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통권 제32호, 2006. 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주)월드리서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200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0년 12월말 현재 환경분쟁처리 통계현황 (<http://edc.me.go.kr/jsp/information/status.jsp>).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 2001. 1
- 최병록,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2007.
- 하혜영, 환경분쟁에서 조정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정성립 요인의 판별과 예측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4), 2009.
-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2006.
- 홍준형 외(편),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 법문사, 2008.
- 南博方, 『ジュリスト, 二〇周年を迎えた公害調整委員会』, 1992. 9.

[Abstract]

A Study on Readjusting Damage Amount for the
Environmental Arbitration

- focused on Mental Damages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emanating from
Construction Sites

Hong, Joon Hyung

In order to vitalize the use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s ADR, it is crucial to provide the injured party with an opportunity to get realistic compensation which should be also sufficient enough to discourage those activities causing environmental damages. Insufficient damage amount has been spotted, therefore, as one of the major sources of dissatisfaction with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EDAA). This paper reviews existing standards and level of damage amount given to the injured within the Arbitration procedure according to the EDAA and suggests some reasonable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practice to enhance the function and user satisfaction of the Environmental Arbitration, by examining various factors to be applied in readjusting the Damage Amount Guideline set by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주 제 어 환경분쟁조정, 재정, 배상액, 배상액현실화방안, 공사장 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Key Words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rbitration, Damage Amount, Mental Damage,
Noise and Vibration, Construction Sites